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3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 민형배·서미화·정동영

이개호・이수진・정성호

이용선 · 홍기원 · 남인순

장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,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.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 면 촌수,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.

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·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됐습니다. 가 죽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합니다.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·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 고 보기 어렵습니다.

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(안

제1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순위자 중 어느 1명만 동의하면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장기등의 기증 동의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후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	제12조(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		
의) ①・② (생 략)	의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	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		
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	른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		
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	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		
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 연장	선순위자 중 어느 1명만 동의		
자순(촌수가 우선한다)에 따른	<u>하면 된다.</u>		
<u>1명으로 한다.</u>			